



주목할 만한 내용

1. 조세관리

- 생산시설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및 법인세 (CIT) 신고
- 세금 손실 방지를 위해 세무감사/조사 강화

2. 법인세 및 이전가격

- 예금 이자에 대한 CIT 감면 적용
- 비현금 지출
- 토지 임대비용의 배분
- 신규 인센티브를 적용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 국가 보고서 ("CbCR")를 제출에 대한 지침

3. 간접세

-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른 VAT 감면에 대한 지침
- 2022년 VAT 감면 대상인 수입품에 대한 추가 지침
- VAT 감면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정

4. 출입국

- 13개국 국민의 비자 면제
-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출입국 정책 복원
- Covid-19 예방 및 입국자 보호

5. 외국인계약자세

-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세금 코드 등록, 세금신고.납부를 위한 포털 도입

6. 무역 및 관세

- VAT 2% 감면 대상이 아닌 수입 물품 결정 안내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2022년 아세안 통일 관세 명칭("AHTN 2022")에 따른 새로운 HS 코드 명칭 개발
- 베트남과 한국 간 영국-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 ("UKVFTA")에 따른 누적 원산지 규칙의 적용
- 페루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수출입우대관세 적용
-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관세 관리감독 요건 실행 지침

조세관리



지침 문서

생산시설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및 법인세 (CIT) 신고

기업이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생산시설이 아닌 사업장이 있으며 해당 사업장 또는 기업이 사업장을 관리하는 세무당국에 등록된 인보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VAT 및 CIT 신고.납부는 본사에서 합산하여 진행하며 해당 납부세액을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에 할당하지 않는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2월 15일 제/5155/CTHN-TTHT 호 OL)

기타

세금 손실 방지를 위해 세무감사/조사 강화

최근에 세무총국은 지방 세무국에 공문을 발송하여 고위험 업종·분야, 성장성 및 세금 징수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검사에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 세무국이 세무감사·조사에 대하여 주력하는 고위험 업종 및 분야가 다음과 같다:

- 인보이스;
- 세금 환급;
- 전자상거래: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공급자의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활동;
- 부동산업.

(세무총국의 2022년 3월 17일 제/769/TCT-TTK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및 이전가격



지침 문서

예금 이자에 대한 CIT 감면 적용

기업이 투자 단계에 사업 활동으로 부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동안 2021년에 금융 활동 (예금 이자)에 의한 소득을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제92/2021/ND-CP호 시행령에 따른 CIT 3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2월 17일 제2203/CTBDU-TTHT 호 OL 및 2022년 2월 28일 제2926/CTBDU-TTHT 호 OL)

비현금 지출

회사가 생산 및 사업활동을 위해 장비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업체가 제3자에게 운송 수수료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당 지출이 다음과 같은 충분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지면 공제될 수 있다: 물류업체에 의해 발행된 인보이스, 제3자에게 은행 지급 증명서, 제3자를 통한 지급 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 (또는 계약 부록)

(Hai Phong 세무국의 2022년 1월 18일 제152/CTHPH-TTHT 호 OL)

토지 임대비용의 배분

토지임대료는 제78/2014/TT-BTC 호 시행규칙의 제6조 (제96/2015/TT-BTC의 제4조에 의해 보완됨)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CIT 목적상 공제될 수 있다. 일시 지급된 토지 임대료의 총액은 토지사용권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 (수리 또는 신축건설을 위한 운영정지 기간을 포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 포함된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2월 22일 제371/CTBNI-TTHT 호 OL)

신규 인센티브를 적용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회사가 Quang Nam 성 Thang Binh 지역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이 지역은 2015년 1월 1일전에 조세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 제118/2015/ND-CP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됨), 회사는 제118/2015/ND-CP호 시행령의 유효한 날로부터 프로젝트의 잔여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2년 1월 6일 제36/TCT-CS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및 이전가격



지침 문서

국가 보고서 ("CbCR")를 제출에 대한 지침

베트남 납세자는 베트남과 국제 조세협정 (Tax Agreement)을 체결하지만 베트남과 유관기관 협정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위치하는 최상위 모회사 ("GUP" - Global Ultimate Parent Company)가 있는 경우 2020년 11월 5일 제132/2020/ND-CP 호 시행령의 제18조에 따른 국가 보고서 ("CbCR")를 세무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GUP가 모국의 규정에 따라 CbCR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2년 1월 18일 제367/CTHDU-TTHT 호 OL)

같은 주제로, 2020년 11월 18일자 제132/2020/ND-CP 호 시행령의 제18.5조에 규정된 CbCR 제출 의무를 평가하기 위해 베트남과 GUP의 모국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은 국제조세조약으로 간주된 것으로 Phu Tho 세무국이 안내한다. 따라서 베트남 납세자는 베트남과 DTA를 맺고 있지만 유관기관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소재한 GUP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CbCR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Phu Tho 세무국의 2022년 1월 21일 제151/CTPTH-TTHT 호 OL)

다국적 그룹은 베트남에 1이상의 납세자가 있는 경우, CbCR 의무와 관련하여, 제132/2020/ND-CP 호 시행령의 제18.5조에 따라, 그룹의 GUP가 베트남 납세자 중에 CbCR를 제출해야 할 한 납세자를 지정해서 통지서를 발행한 것을 Bac Giang 세무국이 안내했다. 지정된 베트남 납세자는 GUP의 회계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통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지정된 베트남 납세자는 GUP의 회계연도의 종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CbCR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Bac Giang 세무국의 2021년 1월 5일 제18/CTBGI-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지침 문서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른 VAT 감면에 대한 지침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했다:

VAT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 관련:

VAT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납세자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제1.1조 및 부록 I,II,III 에 따른 VAT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과 비교하도록 세무국이 안내한다.

인보이스 발행일 관련:

- 선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가 2022년 2월 1일전에 VAT율 10%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서비스를 완료했다. VAT감면은 남은 결제금액에 대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에 발행된 인보이스에 현행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2022년2월1일전에 발행된 인보이스의 경우 VAT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VAT 10% 적용 대상인) 물품 및 서비스는 2022년 1월에 제공되지만 해당 인보이스가 2022년 2월에 발행되면 인보이스 날짜가 잘못된것으로 인식되며 VAT 감면 적용 못 받는다.
- 인보이스가 2022년 2월 1일전에 VAT10%로 발행된 후에 금액에 대한 오류가 있거나 또는 반품으로 인해 2022년 2월 1일 이후에 조정 발행되어야 한 경우 조정 또는 반품 인보이스는 VAT 10%가 적용된다.
- 전기공급과 같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2022년2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발행된 인보이스는 규정에 따라 VAT 감면받을 수 있다.

(재무부의 2022년 3월 23일 제2688/BTC-TC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지침 문서

2022년 VAT 감면 대상인 수입품에 대한 추가 지침

2022년 1월 28일 VAT 2% 감면 대상인 수입품에 대한 확인 및 신고에 관한 제370/TCHQ-TXNK호 OL를 이어서 관세총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수입품에 대한 VAT 신고는 실제 수입품에 근거하고 VAT법령 및 관련 지침문서에 따른 VAT 과세 대상인 상품목록 및 해당 VAT 세율을 비교하므로 진행한다.
- VAT 2% 감면 대상인 수입품의 범위는 제43/2022/QH15호 결의서 및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VAT 8% 적용 대상인 수입품은 VAT 감면 대상인 상품 목록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부록 I,II,III)에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다.
-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부록 I, III 에 규정된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목록은 제43/2022/ QH15호 결의서에 제외된 항목이다.

-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수입품은 부록 I 및 부록 III, A 부의 칼럼 8 "품명", 칼럼 9 "내용", 및 부록 III, B부의 칼럼 3 "상품" 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부록II에 규정된 특별 소득세 과세 대상인 상품에 해당하면 VAT10%를 적용된다.

-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부록 I, 부록 III에 명시된 VAT 감면 대상이 아닌 물품과 관련하여:

- Chapter (02 digit) 만 명시된 경우, 해당 Chapter의 전체 8-digit 코드가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다;
- Heading (04 digit) 또는 Sub-heading (06 digit)이 명시된 경우 해당 Heading/Sub-heading의 전체 8-digit 코드가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다;
- 08- digit의 HS코드가 명시된 경우 그 08-digit 코드에 해당된 물품/ 서비스만 세금감면대상이 아니다.

(관세총국의 2022년 2월 18일의 제521/TCHQ-TXNK호 OL)

VAT 감면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정

Bac Ninh 세무국은 VAT 감면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Step 1:

납세자가 생산, 공급, 판매 또는 수입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품명 및 상품 산업 코드 (07자리 숫자의 코드, 제43/2018/QĐ-TTg호 결정에 따른 베트남 상품 코드 시스템의 목록을 참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

- 상품의 용도, 기능, 설계 및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제품 산업 코드 결정;
- 수입시 적용되는HS코드는 국내시장에서 생산 및 거래된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다;
- 가공 및 수리활동, 건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 활동 (부록 I에 의한 3가지의 서비스 그룹제외: 은행 및 금융, 보험, 부동산)은 VAT감면 대상이다;
- 물품과 자재와 같이 제공된 가공·수리·설치 서비스의 경우 VAT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급 물품과 자재의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 부록 III에 의한 정보기술 상품 및 서비스는 완제품과 첨부 부품을 포함한다.
- 부록 III의 B부에 의한 정보기술 상품 및 서비스는 제09/2013/TT-BTTTT의 부록2에서 발체하므로 납세자가 제71/2007/ND-CP 호 시행령 및 09/2013/TT-BTTTT호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품의 규정 및 정의를 참조할 수 있다

Step 2:

납세자가 품명 및 해당 코드를 확인한 후, 제15/2022/ND-CP호에 따른 부록 I, II, III의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과 비교해야 한다.

- 부록의 목록에 해당된 상품 및 서비스는 납세자에 의해 직접 생산 (또는 가공 후 재수입), 판매, 수입 또는 거래된 경우 VAT 감면 받을 수 없다.
- 부록의 목록에 해당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는 납세자에 의해 직접 생산 (또는 가공 후 재수입), 판매, 수입 또는 거래된 경우 VAT 감면 받을 수 있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2월 24일 제396/CTBNI-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출입국



신규 규정

13개국 국민의 비자 면제

정부는 2022년 3월 15일에 제32/NQ-CP호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 비자 면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한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및 벨라루스의 국민은 여권 유형 및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15일의 체류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 이 정책은 2025년 3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시행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연장을 고려한다.
- 이 결의안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의 2020년 2월 28일 제21/NQ-CP호 결의, 2020년 3월 2일 제23/NQ-CP호 결의, 2020년 3월 11일 제29/NQ-CP호 결의 및 2020년 3월 19일 제33/NQ-CP호 결의를 대체한다.

(정부의 2022년 3월 15일 제32/NQ-CP호 결의)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출입국 정책 복원

2022년 3월 15일 제1606/VPCP-QHQT호 OL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3월 15일부터 외국인 및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국민에 대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출입국 조치 및 절차의 복원에 동의한다.

(정부청의 2022년 3월 15일 제1606/VPCP-QHQT호 OL)

Covid-19 예방 및 입국자 보호

입국 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SARS-CoV-2에 대해 24시간 이내 빠른 검사 결과가 인정된다 (기존에 72시간 이내 RT-PCR/RT-LAMP 검사 결과만 인정).

이 신규 지침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부의 2022년 3월 15일 제1265/BYT-DP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기타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세금 코드 등록, 세금신고.납부를 위한 포털 도입

세무총국은 2022년 3월 21일에 외국인계약자를 위한 포털 도입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2022년3월21일부터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9장에 의한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외국인 계약자에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세금 신고 및 납세 기한:

외국인계약자는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분기별 세금신고.납부기한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의 첫달의 마지막날이다.

세금 계산 방법:

외국인계약자는 매출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VAT") 및 법인소득세 ("CIT")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 VAT 및 CIT 과세 매출이 외국인계약자가 받는 수익이다.
- 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율이 VAT에 대한 제209/2013/ND-CP호 시행령 및 CIT에 대한 제218/2013/ND-CP호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다.

세금 코드 등록,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세무총국의 웹 사이트 (<https://etaxvn.gdt.gov.vn>)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VAT 2% 감면 대상이 아닌 수입 물품 결정 안내

제15/2022/ND-CP호 시행령 (“제15호 시행령”)의 지침에 따라(딜로이트의 2월 세무관세뉴스에 업데이트됨), 관세총국은 VAT 세율 신고에 대한 추가 지침과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수입 물품의 품명 및 HS 코드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2%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수입 물품은 다음 목록에 포함된다.

- 부록 I의 열 (8) “품목명”, 열 (9) “명세”; 또는
- 부록 III의 A부분 또는 부록 III의 B부분 열 (3) “상품”, 또는
- 부록 II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 물품

(관세총국의 2022년 2월 25일 제642/TCHQ-TXNK호 OL)

신규 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산업무역부는 2022년 2월 18일에 RCEP에 따른 원산지 규칙에 관한 제05/2022/TT-BCT호 시행 규칙을 공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원산지 결정
- 원산지 증명 및 검사

시행 규칙에 첨부된 부록:

- 부록 I: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부록 II: 원산지 증명(“P/O”)에 표기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 목록
- 부록 III: 수출 RCEP C/O 양식 및 C/O 추가 신고 양식 샘플
- 부록 IV: 조건부 관세 차등이 적용되는 물품 목록

RCEP의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원산지 물품은 본 시행령에 따른 RCEP C/O 양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에 RCEP 회원사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아래 원산지 증명 중 하나로 입증하는 경우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 C/O; 또는
- 인증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

또한 본 시행령은 베트남 발행 당국이 RCEP 및 수입 당사자간 약속에 따라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본 시행령 발효일 이전에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해 RCEP C/O 양식을 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발행된 원산지 증명은 RCEP 수입 당사자의 세관 당국에 의해 수락되어야 한다.

본 시행령은 2022년 4월 4일부터 유효하다.

(산업무역부의 2022년 2월 18일 제05/2022/TT-BCT호 시행규칙)

지침 문서

2022년 아세안 통일 관세 명칭(“AHTN 2022”)에 따른 새로운 HS 코드 명칭 개발

재무부는 제 65/2017/TT-BTC호 시행 규칙 및 제 09/2019/TT-BTC호 시행 규칙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 및 수출 상품의 새로운 명칭을 공표하는 시행 규칙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 초안은 관세총국의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되었으며 재무부는 현재 다른 관련 부처, 기관 및 당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세총국은 베트남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AHTN 2022에 따른 HS 코드 명칭을 공식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HS 코드의 결정은 현행 규정을 계속 준수하고 전환 기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총국의 2022년 2월 25일에 제 638/TCHQ-TXNK 2022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베트남과 한국 간 영국-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 (“UKVFTA”)에 따른 누적 원산지 규칙의 적용

정부는 산업무역부에게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대표와 외교문서에 서명하고 UKVFTA에 따른 직물 생산 원자재에 대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시행에 대해 영국에 통보하도록 위임하였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UKV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의 누적 원산지 규정에 대한 지침 문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위임받았다.

(정부의 2022년 2월 25일 제20/NQ-CP호 결의서)

신규 규정

페루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수출입우대관세 적용

정부는 2022년 03월 10일에 제21/2022/ND-CP호 시행령 (“제21호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2019년 6월 26일 제57/2019/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2019년 ~ 2022년의 CPTPP 시행에 관해 2021년 9월 19일부터 본 시행령의 시행일까지 관련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베트남과 페루 공화국 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우대관세가 적용 가능하다.

본 시행령은 서명일부터 유효하다.

(정부의 2022년 3월 10일 제21/2022/ND-CP호 시행령)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관세 관리감독 요건 실행 지침

1. 관세총국의 시스템과 연결된 카메라 시스템 설치:

- 카메라 시스템은 게이트, 출입문 및 물품 보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른 생산 및 운영 영역에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 2022년 3월 2일 이후에 설립된 EPE의 경우: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기술 표준을 적용한다.
- EPE는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 물품 보관 위치 및 카메라 설치 위치를 번호 및 설명과 함께 표기하여 관할 관세지국에 제출한다.
 - 카메라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한다.
 - 관할 관세지국에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한다.

• 카메라 시스템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작동해야 한다.

• EPE는 2022년 4월 25일까지 관세 관리감독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관세당국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관세 관리감독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EPE기업이 지침을 수행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관세 구역에 관한 관세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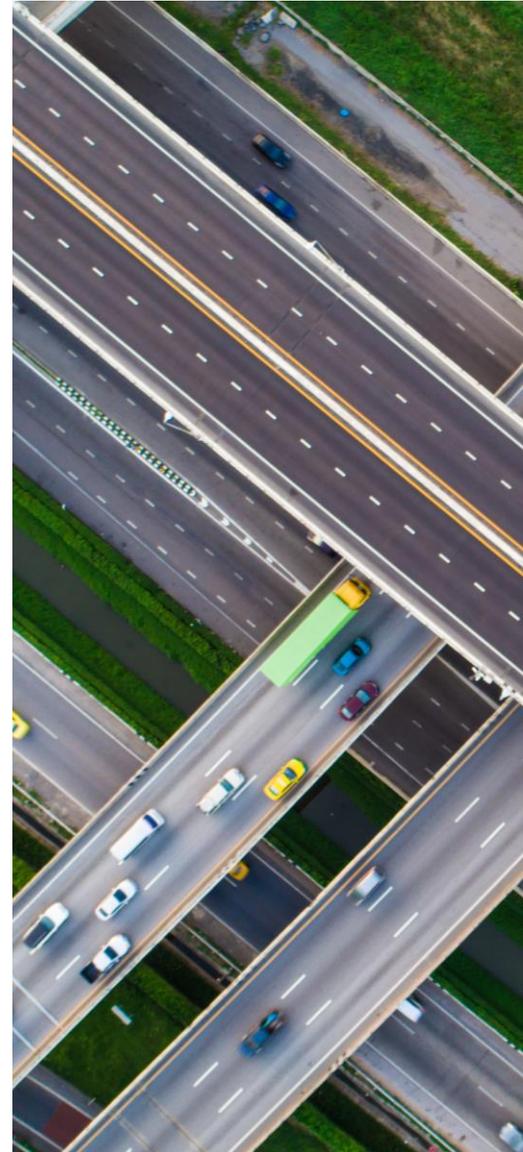
(관세총국의 2022년 3월 2일 제247/QD-TCHQ호 결정, 2022년 3월 4일 제730/TCHQ-GSQL호 OL)

2. EPE에 대한 관세 관리감독 규정 일관 적용

관세총국은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1조 10항에서 언급된 EPE에 대한 관세 관리감독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관된 적용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였다.

- 견고한 울타리의 규격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설립된 EPE의 종속 지점 관리
- EPE 카메라 데이터의 저장 기간
- 관세 관리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EPE에 대한 관세 정책
- 현행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EPE에 대한 최소 면적 요건은 없음

(관세총국의 2022년 3월 2일 제679/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